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7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128

I. 조례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안 일 : 2019. 10. 16.
- 다. 회 부 일 : 2019. 10.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반영하여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 시설’로 각각 정비하고자 함.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주관부서를 변경하고 사회복지시설 명칭 등 현행화 함.

나. 주요내용

-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시설의 소재지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 (1) 복지시설의 명칭 변경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 (2) 실·본부·국 명칭 변경 : 복지본부 → 복지정책실
- (3) 복지시설별 주관부서 정비
 -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권익담당관 :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영보자애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마리공동체
 - 복지정책과 → 지역돌봄복지과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4) 시립시설의 주소 현행화 및 정정 : 시립영보자애원 등 20개 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결과: 미첨부(입법예고 생략)
 - 법령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입법예고 제외 사유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을 반영한 용어 정비와 복지정책실 및 여성가족정책실의 조직개편 내용 및 시립시설들의 명칭 및 주소 현행화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주요 내용으로는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을 ‘노숙인시설’로 용어의 정비를 제안하고,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시설별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사항 검토

가. 용어의 정비

- 2011년 6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전까지 사용되던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저목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를 신설하게 됨.
- 이는, 이전까지 이원화되어 사용되던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제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이 주요한 이유였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따르면, ‘부랑인(浮浪人)’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뜻했고, ‘노숙인(露宿人)’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를 뜻했음.
- 이에 따라 부랑인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노숙인 지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정책 통합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 부랑인이란 용어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통한 조문체계의 정비 관점에서 적절하다고 보여짐.

나. 조직개편 사항 반영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및 주관부서 정비

- 또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복지시설 별 실·본부·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함
 - 집행부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로 복지본부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①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② 그에 따라 본 조례 [별표]의 주관국(과) 분류에서 시립여성보호센터, 시립영보자애원,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마리공동체의 주관부서를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여성권익담당관으로,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지역돌봄복지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시립시설의 명칭 및 주소 현행화

- 본 조례의 [별표] 의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3프로농장’이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로 명칭을 개정할 것을 반영함.
- 또한, 본 조례의 [별표] 에는 총 83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시립영보자애원 등 20개 시설의 주소를 현행화함.
 - 총 20개 기관 가운데 동의동쪽방상담소는 시설 이전에 따른 주소개정이며, 나머지 19개 기관의 경우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개정하는 등 단순 주소정비에 따른 현행화임.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률을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던 ‘부랑인’이라는 용어는 노숙인과의 개념 중복 문제 등으로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노숙인’으로 용어가 통일되었음.
- 또한, ‘부랑인 및 노숙인’을 ‘노숙인’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노숙인·부랑인으로 나뉘어 시행되던 지원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정비로, 이번 개정을 통해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중앙정부 복지사업과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행부의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시립복지시설의 명칭·소재지를 현행화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음.